

CCCTIM 정관

제1조 (목적)

본회는 '성숙한 기독교사 공동체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선교사자녀(MK) 교육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이름은 "CCCTIM(CCC Teachers In Mission, 씨씨티아이엠)"이라고 한다.

제3조 (회원)

1항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항 (회원의 권리)

회원은 교사양육, 지역모임, 전문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외 본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항 (회원의 의무)

지역모임 또는 양육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사역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은 교육선교 후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4항 (회원의 제명)

본회의 철학과 사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간사회의를 통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제4조 (조직)

1항 (조직의 구성)

본회는 대표간사, 간사, 리더, 회원, 교사선교사를 둔다.

2항 (대표간사)

자격 : 본 회를 간사로 5년 이상 섬긴 자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 등 CCCTIM의 사역 영역을 고루 경험한 사람
- 선출 : 간사회의에서 추천을 하고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 임기 : 5년으로 한다.

가. 현임 대표간사와 다음 대표간사 내정자가 함께 하는 시간(Overlap)을 1년 갖는다.

역할

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한다. 나. 간사회의 및 리더모임을 주관한다.

다. 임시 간사회의 및 리더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불신임 : 대표간사의 불신임 건에 대하여 간사회의를 통하여 대표간사 외 간사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대표의 부재

대표 교사가 대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재기간 동안 임시간사회의를 거쳐 임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3항 (간사)

자격 : 본 회를 리더로 3년 이상 섬긴 자

선출 : 간사회의에서 추천을 하고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역할

가. 간사는 본 회의 의결기구인 간사회의로, 연 3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월 중 1회) 이상 모인다.

나. 간사는 간사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단,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한다.

다. 출석 인원이 2/3 이하인 경우, 추후 임시간사회의를 소집한다. 라. 간사는 공동체의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간사 회비 10만원 이상과 교육선교후원금 2만원 이상을 후원해야 한다. 바. 지역모임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대표들을 돕는다.

정족수

가. 본 회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의 정족수를

5~9명으로 한다.

나. 간사 구성은 나이, 성비, 지역 등을 고려한다.

다.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간사회의의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의결 : 만장일치로 한다.

4항 (리더)

자격

가. 본 회의 모임을 3년 이상 참여한 회원이어야 한다.

나. 지역모임 개척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간사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선출 및 인준 : 간사회의에서 추천을 하고 만장일치로 선출 및 인준한다.

유형

가. 리더에는 양육리더, 지역대표, 전문모임팀장이 있다.

나. 양육리더 : 지역에서 교사성숙프로그램에 따라 교사를 양육한다.

다. 지역대표 : 지역모임을 대표하여 섬긴다.

라. 전문모임팀장 : 각종 전문모임을 섬긴다.

역할

가. 교사양육을 할 수 있다.

나. 지역대표로 섬길 수 있다.

다. 지역모임과 전문모임을 개척하거나 섬길 수 있다.

라. 리더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마. 리더회비 4만원 이상과 교육선교후원금 2만원 이상을 후원해야 한다.

5항 (교사선교사)

자격 : 본 회의 철학과 사역에 동의하며 파송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선발 및 파송** : 간사회의를 통하여 선발하고 파송한다.

유형

가. 국내 교사선교사와 국외 교사선교사로 한다.

나. 국내 교사선교사 : 국내 교육선교를 위해 본 회에서 파송한 자

다. 국외 교사선교사 : 국외 교육선교를 위해 본 회에서 파송한 자

6항 (쉽, 복귀, 사임, 면직)

본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간사회의의 만장일치를 통해 간사, 리더, 교사선교사를 쉽·복귀·사임·면직시킬 수 있다.

쉽 : 개인적 사유로 인한 청원 및 간사회의의 권고로 간사, 리더, 교사선교사의 역할을 설 수 있다.

복귀 : 쉽 복귀 요청서를 제출하여 쉽으로부터의 복귀 의사를 간사회의에 알려 의결을 통하여 복귀할 수 있다.

사임 : 개인적 사유로 인한 청원 및 간사회의의 권고로 간사, 리더, 교사선교사의 역할을 사임할 수 있다.

면직 : 본 회의 철학과 사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간사회의를 통하여 간사, 리더, 교사선교사 등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5조 (재정)

1항 (재정의 수입)

본 회의 수입은 교육선교 후원금, 리더·간사회비, 기타 특별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2항 (재정의 운용)

본 회의 모든 사역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한다.

1. 교육선교 후원금은 KoKi 장학금, KoKi 사역, 교사선교사(국내, 국외) 사역비 지원 등에 사용한다(별도로 간사회의 심의를 받은 '교육선교 후원금 사용 규정'에 따라 운용함).
2. 리더·간사회비는 사역 및 공동체 전체를 섬기기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별도로 간사회의 심의를 거친 '리더·간사회비 사용 규정'에 따라 운용함).

3항 (재정의 의결 및 집행)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간사회의를 통해서 재정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재정 담당자는 연간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간사회의(당해년도 마지막 간사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4항 (재정의 결산 및 보고)

재정 담당자는 재정 현황을 필요시 리더 간사회의에서 보고하며 수련회 때 전 회원에게 결산·보고한다.

제6조 (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회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서 문서화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본회의 정관은 개정 후에 간사들의 서명 날인 후에 문서로 보존한다.

<행정 문서 목록>

회원가입서

공문(기안문, 면직 확정 통보서 등) 교육선교 후원금 사용 규정 리더·간사회비 사용 규정

- 1) 리더십(대표간사, 간사, 리더, 지역대표, 교사선교사 등) 지원서
- 2) 리더십(대표간사, 간사, 리더, 지역대표, 교사선교사 등) 임명장
- 3) 회의 및 모임 불참자 위임장
- 4) 회의록 및 모임 기록(간사회의, 리더모임 등)
- 5) 쉼 청원서 또는 쉼 권고서
- 6) 쉼·복귀·사임 신청서
- 7) 기타 필요한 문서

제8조 (효력 및 개정)

본 정관은 간사회의의 인준을 거쳐 간사들의 서명 날인 후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의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대표간사에게 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고 간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정 : 2012년 3월 2일

개정 : 2014년 3월 22일

개정 : 2016년 3월 19일

개정 : 2016년 6월 18일

개정 : 2018년 9월 29일

개정 : 2019년 1월 5일

개정 : 2020년 1월 4일

개정 : 2021년 8월 13일

개정 : 2023년 1월 7일

개정 : 2024년 1월 6일

개정 : 2025년 1월 4일